2024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 "202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추후 발표되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서울교육대학교

I. 주요 변경사항

1. 전형별 모집인원 조정

(단위: 명)

						(21). 8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2024학년도	비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추천전형			40	
	학생부 종합	교직인성우수자전형			100	
		기회균형 특별전형 I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원 내	5	
			농어촌학생전형		10	
수시		기회균형 특별전형표	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		19	
			장애인등대상자전형	정 원	11	
	기타	기타	재외국민특별전형	외	7	
		특별전형	북한이탈학생전형		3	
			소계	195		
정시 (나)군	수능 위주	일반전형			202*	*2022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결원 발생 2명 이월
	소계					
	합계					

2.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시 모든 전형
- 국어+수학+영어+탐구(사회/과학) 4개 영역 합 9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기회균형특별전형 I·표 및 기타특별전형**은 4개 영역 합 12등급 이내, 한국사 동일
- 정시 수능위주(일반전형)
- 국어, 수학, 탐구(사회/과학)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mark>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mark>

3. 전형요소별 배점 및 전형단계

모집	전형 유형		전형명	전형요소 반영률 및 전형단계	
	학생부 교과	학	교장추천전형	1단계(2배수): 학생부교과 성적 100% 2단계(1배수): 교과 성적 80%+면접평가 20%	
	학생부 종합	교직	인성우수자전형		
		기회균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수시		특별전형 I	농어촌학생전형	1단계(2배수): 서류평가 100% (학교생활기록부) 2단계(1배수): 서류평가 50%+면접평가 50%	
		기회균형 특별전형 표	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		
			장애인등대상자전형		
	기타	기타 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일괄합산: 면접평가 100%	
			북한이탈학생전형		
정시 (나) 군	수능 위주		일반전형	1단계(2배수): 수능성적 100% 2단계(1배수): 수능성적 80%+면접평가 20%	

Ⅱ. 수능최저학력기준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 교과	학교장추천전형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u>4개 영역의 합이 9등급</u> 이내 ※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제2외국어/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학생부 종합	교직인성우수자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I	국가보훈 대상자전형			
			농어촌 학생전형			
수시		기회균형 특별전형 표	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mark>4개 영역의 합이 12등급</mark> 이 ※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제2외국어/한문		
			장애인등 대상자전형	반영하지 않음		
	기타	기타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북한이탈 학생전형			
정시 (나)군	수능 위주	일반전형		■ 수능반영영역- 국어, 수학, 탐구(시호)/괴학) (제2외국어, 한문은 미반영) ■최저학력기준-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Ⅲ. 지원자격

모집	전형	저	형면	수능최저학력기준		
시기	유형	전형명		구승의시탁탁기판		
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징	·추천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가. 2024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나.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인원은 고교별 재적인원 기준 3%이내(고3 재적인원 * 0.03,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학생부 합	교직인성우수자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가보훈 대상자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나.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기회균형 특별전형 I	농어촌 학생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나.「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중·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거주한 자 (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소재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당해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 농·어촌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체육계열 고등학교 등)는 지원할 수 없음		
		기회균형 특별전형 표 	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등 대상자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710	기타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자 포함)한 재외국민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 수한 경우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인정 ※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기간이 12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 인정
	기타		북한이탈 학생전형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정시 (나)군	수능 위주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